

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263
----------	------

2024년 12월 20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
-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18일
- 상정일자 : 제327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24년 12월 18일 상정·의결(수정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서울특별시장)

1. 제안이유

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청년층 전체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추진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0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4. 9. 12. ~ 10. 2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개정안의 취지

- 본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.
- 한편, 같은 취지로 청년 대상 사업에 있어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는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이 327회 정례회에 제출¹⁾되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(위원회 수정가결).

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

가.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제정 및 개정 현황

- 서울시에서는 2022년 9월 전국 최초로 『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』를 제정하여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.

1) 의안번호 2272, 제출일 : 2024.10.16., 도시계획균형위원회

가족돌봄청년지원조례 제·개정내용

- 2022년 9월 『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』 제정
- 2023년 7월 지원사업 추가('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', '교육지원사업')
- 2023년 12월 지원사업 추가('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·간병 지원사업')
가족돌봄청년의 나이변경(기존 14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4세 이하로 변경)

나. 개정안 주요 내용

- 본 조례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연령 상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, 사업 추진 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연령 상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

〈표〉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0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·제11조 (생 략)	제11조·제12조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

- 본 조례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지원연령 상한 연장대상 사업은 조례 제7조(지원사업)에서 규정된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,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임.

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
2.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
3.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·정서 지원사업
4.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
5.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
6.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·체육활동 지원사업
7.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·간병 지원사업
8.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
9.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
10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
다. 제대군인 우대 지원 관련 법적 근거

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는 ‘의무복무 제대군인’을 「병역법」, 「군인사법」,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,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.

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는 제대군인의 사회복지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제대군인의 사회복지 지원과 인력 개발·활용, 복무 경력 인정 및 기술 등의 사회 활용, 고용증진과 생활 안정에 대한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

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
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(이하 '제대군인법')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제대군인”이란 「병역법」, 「군인사법」 또는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[퇴역·면역(免役)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한 사람을 말한다.

2. (생략), 3.(생략)

4. “의무복무 제대군인”이란 「병역법」, 「군인사법」 또는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,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·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,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16조(채용 시 우대 등)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.
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9조(응시연령 상한 연장)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

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.

1.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: 3세
2.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: 2세
3.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: 1세

- 또한 지원 연령 상한 연장을 최대 “세 살의 범위”로 정하고 있는데, 병역법상 현역의 복무기간은 육군/해병대 2년, 해군 2년 2개월, 공군 2년 3개월(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각각 18개월, 20개월, 21개월로 단축시행 중), 보충역 2년 2개월(21개월로 단축 시행)이나, 대체역의 경우 최대 36개월임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라. 의무복무 제대군인 서울시 지원현황

- 청년기(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정의에 따른 “청년“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의미함)에 의무복무를 하게 되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에 집중되어 있음.
- 서울시에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각종 청년 정책사업의 참여기간을 군대 복무기간만큼 늘려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할 계획임.
- 현재 서울시에서 청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 51개 중(붙임 자료 참조), 일자리와 관련한 ‘미래 청년 일자리’, ‘서울 매력 일자리(뉴딜)’, ‘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’ 사업 등 6개 사업은 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제19조(응시연령 상한 연장)의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규정을 준용하

여 추진하고 있으며, 일자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들(청년월세지원, 청년수당, 고립·은둔청년 지원사업 등 24개)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.

- 이러한 조례 근거 마련을 위해 금번 제327회 정례회에 ‘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’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가결(위원회 수정)되었음.

마. 용어 명확화 필요

- 개정안에서는 지원 연령 상한을 정함에 있어 ‘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고려’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「제대군인법」 제2조 제1항제4호에서는 ‘의무복무 제대군인’을 「병역법」, 「군인사법」,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,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. 이 중 “보충역”과 “대체역”의 경우에는 ‘군’에서 근무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복무하는 경우도 있어 보충역과 대체역의 경우에는 지원 연령 상한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.

□ 병역의 종류

역종	현역		보충역	대체역
복무형태 (간부제외)	현역병 (육·해·공군, 해병대)	전환복무 (의무경찰, 의무해양경찰, 의무소방원)	사회복무요원, 예술·체육요원, 공중보건조사,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, 공익법무관, 공중방역수의사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	병역의무자 중 「헌법」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,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

□ 보충역 구분에 따른 복무기관(장소), 복무방법 등

1. 사회복무요원 : 공기업, 준정부기관, 지방공사, 지방공단, 지방의료원, 사립학교, 비영리기관 등
2. 예술·체육요원 : 해당분야에서 34개월 복무(봉사시간 이수)
3. 전문연구요원 :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·학문분야 종사
4. 산업기능요원 : 산업체에서 제조·생산 분야 종사

□ 대체역의 복무분야, 복무기관(장소) 등

1. 대체업무 : 대체복무기관인 교도소,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
2. 복무분야 : 급식, 물품, 교정교화, 보건위생, 시설관리

○ 서울시의 개정 취지도 보충역과 대체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, 법률에서도 모두 포함하여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‘**군복무기간**’은 ‘**복무기간**’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- 같은 이유로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‘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’ 일부개정조례안도 해당부분이 수정·가결되었음

<표> 관련 조례안 심사 현황

의안명	제출자	제출일자	주요내용	진행단계
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서울특별시 시장	24.10.16.	청년정책 시행 시 <u>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</u>	위원회 수정가결

3 종합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 돌봄청년 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, 사업 추진 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
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제대군인의 사회복지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, 조례에서 관련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개정안에서는 지원 연령 상한을 정함에 있어 ‘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고려’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있는데, 「제대군인법」의 취지와 규정에 맞도록 ‘군복무기간’은 ‘복무기간’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

서울시 청년정책 제대군인 우대정책 현황 (51개)

* ㉠ '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연번, ㉡ 조례상 청년 연령 대상 사업, ㉢ 사회보장협
의 필요 사업

구분	제대군인법령, 지방침 근거	조례개정 후 시행예정	실익없음
50개	6개(기시행 3, 예정 3)	24개	17개
사업 명	6.㉠서울 매력일자리(뉴딜) 8.㉠미래 청년 일자리 9.㉠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 ※ 기 시행 3개 사업 1.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3.청년인턴 직무캠프 41.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	2.㉡취업날개 서비스 4.㉡일자리카페운영 5.㉡청년일자리 매칭 전담창구 운영 10.㉡㉢서울 청년 해외일경험 사업 11.㉡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13.㉡청년 쿡 비즈니스센터 14.㉡캠퍼스타운 혁신 및 청년희망·지역경제 활성화 15.㉡프랩이카데미 운영 16.㉡로컬크리에이터 양성 17.㉡청년 밀키트 창업지원 19-2.㉡㉢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(무주택세대주 청년'26년) 21.㉡㉢청년월세지원('26년) 30.㉡청년인생설계학교 34.㉡청년수당 36.㉡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38-2.㉡청년층신용회복지원 (학자금 대출) 39.㉡청년 마음건강 지원 42.㉡가족돌봄 청년 지원 43.㉡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44.㉡고립은둔청년 지킴이 양성교육 46.㉡청년참여기구 운영 49.㉡청년봉사단 운영 50.㉡청년해외봉사단 51.㉡지역별 청년센터 설치·운영 52.㉡서울 광역청년센터 운영	7.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(15세 이상은 연령 무관 신청 가능) 재학생 및 휴학생이면 지원 가능) 12.청년창업꿈터운영(25년 4월 종료) 19-1.신혼부부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(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이내 예비 부부 신고시점으로 연령 무관) 20.청년과 어르신 주거 공유 (연령, 제대군인 관계없이 대학(원) 재학생 및 휴학생이면 지원 가능) 22.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(이사 후 2년이내 신청해야 하는 사업으로 제대군인 연령 연장 실익 없음) 25~29. 각종 장학금 지원 5개 사업 (연령, 제대군인 관계없이 장학금 지원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) 31.청년문화패스지원(군복무중 신청 가능) 32.~33.청년예술청 지원 등 2개 사업 (예술인 지원 조례로 지원대상 확대) 35.서울 영테크(군복무중 신청 가능) 37.학자금대출이자지원(연령 무관 지원) 38-1.청년층신용회복지원 (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신용회복위 사업) 40.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지원 (군 입대 중에도 수당 지급)

구분	제대군인법령, 시방침 근거	조례개정 후 시행예정	실익없음
50개	6개(기시행 3, 예정 3)	24개	17개
			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p>※ 추가 검토 4개 사업</p> <p>18.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(국토부 지침 개정 필요)</p> <p>23. 청년안심주택 매입 (국토부 지침 개정 필요)</p> <p>24.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(국토부 훈령 개정 필요)</p> <p>45. 청년내일저축계좌 (복지부 지침 개정 필요)</p> </div>

- ※ ① 추가 검토(4개) : 중앙부처 훈령, 지침 개정 선행 필요에 따른 건의 검토
- ② 실익없음(17개) : 사업 신청시 '연령 무관', '군 복무 중에도 지원' 가능
- ※ 출처 :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개정안에서는 “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관련 법에 따르면 현역군인 뿐만 아니라 보충역,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역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포함될 수 있음. 따라서, 보충역과 대체역으로 복무한 사람 역시 해당 조례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해당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.

나. 수정안의 주요내용

- ‘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’을 ‘제대군인의 복무기간’으로 수정함 (안 제 10조).

VII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263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12월 18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에서는 “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관련 법에 따르면 현역군인 뿐만 아니라 보충역,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역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포함될 수 있음. 따라서, 보충역과 대체역으로 복무한 사람 역시 해당 조례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해당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‘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’을 ‘제대군인의 복무기간’으로 수정함 (안 제 10조).

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10조 중 “군 복무기간”을 “복무기간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수정(제안)안 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0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<u>군 복무기간</u>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복무기간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<u>제10조 · 제11조</u> (생략)</p>	<p><u>제11조 · 제12조</u>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</p>	<p><u>제11조 · 제12조</u>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10조(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10조</u> · <u>제11조</u> (생략)</p>	<p><u>제11조</u> · <u>제12조</u>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</p>